

세종자이e편한세상

신혼부부 특별공급 체크리스트

세종자이e편한세상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62조입주대상자자격 확인 등에 의거 입주대상자(당첨자)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'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에 따라 구성된 주택신상망을 이용하여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의뢰합니다. 또한 계약체결 전 제출한 입주대상자(당첨자)의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서류를 확인하여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**입주대상자(당첨자)에 대하여 7일간의 소명기간을 부여**하며, 소명기간 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경우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67조 제8항에 따라 당첨을 취소하며, 부적격자로 전산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**최대 1년** 동안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)의 당첨이 제한됩니다. 따라서 관련법령에 의거 입주대상자(당첨자)는 아래의 제출기한까지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종자이e편한세상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일정 안내

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	서류제출(당첨자)	계약체결(당첨자)
2019.06.10(월) 금융결제원 (www.ap2you.com)	2019.06.11(화) ~ 06.14(금) 10:00~17:00	2019.06.26(수) ~ 06.28(금) 10:00~16:00
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: 세종자이e편한세상 견본주택(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-1)		

자격요건 확인 및 본인 검증서류

구분	체크사항	확인
주민등록표등본	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전원) /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발급 - 배우자 분리세대 여부 확인 - [주택 소유 시] 만 60세 이상 (1959.05.24 이전) 직계존속의 소유여부 확인	<input type="checkbox"/>
주민등록표초본	-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주소변동 사항, 세대구성명/관계 등을 전부 포함발급	<input type="checkbox"/>
혼인관계증명서	-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,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'상세 내역'을 포함하여 발급 -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는 경우,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'상세 내역'을 포함하여 발급	<input type="checkbox"/>
가족관계증명서	-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발급	<input type="checkbox"/>
인감증명서	-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※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 (본인발급분에 한함)	<input type="checkbox"/>
인감도장, 신분증	-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) / 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	<input type="checkbox"/>

사업주체 및 관련기관 자격확인 등 추가 필요서류

구분	체크사항	확인
주민등록표등본	-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-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 배우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녀 (_____)
가족관계증명서	-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-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 자녀 (_____) <input type="checkbox"/> 배우자의 전혼 자녀
출입국사실증명원	- 해당지역 신청자의 경우 필수 ※ 기록대조일을 (생년월일) 부터 ~ 입주자모집공고일 (2019.05.24) 까지로 설정	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
기본증명서	-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	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
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	-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임신증명서류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	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
입양관계증명서	-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※ 입양의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
최하층 우선배정입증서류	-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경우 [만 65세 이상인 자 (1954.05.24 이전) 또는 그 세대에 속한,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,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]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자 (_____)
부적격	-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,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	<input type="checkbox"/>
	- 소형·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	<input type="checkbox"/>
소명 서류 관련	-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자격심사 조회 이후 자산·소득에 대한 적격임을 증명하는 서류	<input type="checkbox"/>
	- 기타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_____	<input type="checkbox"/>

제 3자 대리인 서류접수 시

-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/ 용도 :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(본인발급분에 한함),
- 청약자의 인감도장,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[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9.05.24 이후 발행분]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

※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

① 건물등기부등본(등기접수일 기준)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처리일 기준, 가옥대장 등본 포함)

② 무허가건축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등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가 필요함입니다.

※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(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)

- 신청자, 배우자,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아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(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 포함)하며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.

- 입주대상자(당첨자) 명단은 개별로 통보하지 않으며, 당첨자 발표 이후 아파트투유(www.ap2you.com)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, 착오방지를 위하여 당첨자의 전화문의에는 개별 응답하지 않으니 아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